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등>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13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장동혁의원 등 12인
2. 제 출 일: 2024. 11. 28.
3. 회 부 일: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 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지표에 따른 사회통합지수를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u>제9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 조사</u>
2. ~ 6. (생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사회통합지수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 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지수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 제5조 및 제6조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¹⁾ 법령규정으로는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등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서 반복적·형식적인 지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성과지표가 ‘사업의 운영여부, 회의·행사 및 교육 개최 여부’ 등 대부분 투입(input)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인센티브 등의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²⁾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체류외국인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장기	1,731,803	1,610,323	1,569,836	1,688,855	1,881,921
단기	792,853	425,752	386,945	557,057	625,663
인구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25,329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4.87%	3.93%	3.79%	4.37%	4.89%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년 12월)

한편, 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07,584명으로 2022년 대비 11.7%(261,672명) 증가하였으며, 장기 체류외국인과 단기 체류외국인은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2) 이민정책연구원, 『이민통합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지수 측정』, 2021. 12. pp.4.-5.

각각 1,881,921명과 625,663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1.4%, 12.3% 증가하였음.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4.89%로 다시 상승하는 등 체류 외국인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결혼이민자 또한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 전년대비 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 국적동포 수 역시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외국국적동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결혼이민자	166,025	168,594	168,611	169,633	174,895
국적취득자	12,357	15,649	13,637	13,291	14,549
외국국적동포	878,439	811,211	778,670	804,976	848,724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년 12월)

이와 같이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하는 현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공백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평가체계는 미비함.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됨.

유사입법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³⁾

또한, 「교통안전법」은 교통수단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하여 외국인 사회통합지표를

3)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하였는바, 통합기반, 통합촉진, 통합상태 3개의 차원(대분류)과 노동·교육 등 15개의 중지표, 이를 세분화한 3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⁵⁾

[2023년 지역사회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차원 (대분류)	중지표	세부지표
통합 기반	법·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이민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 이민자 대표, 협의회 등 이민자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독립 자문기구 유무 중앙정부기관과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정례화된 협의체 구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간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정례화된 협의체 구성 여부 장기거주권(비자변경 등) 획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도화
		이주민의 출입국행정 접근성 및 만족도 이주민의 민원행정 접근성 및 만족도 이민자 관련 지원기관(다가센터,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접근성 및 만족도 관계공무원 대상 이민자 수용성 교육 정례화 위탁기관 활동가 등 관련 실무자 교육 이민자 현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통계	이민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실태조사 등)
	수용성	내국인 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통합 촉진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디지털역량	디지털기기 활용 빈도
	한국사회 연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인 수 살고있는 지역(시군구)에 대한 소속감
	안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이민자(외국인)의 중대범죄 비율
통합 상태	노동	지난 3년간 고용률 추이, 지난 3년간 실업률 추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소득	월평균 임금(내국인 주민과 차이)
	교육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내국인 주민과 차이) 자녀 학업성취도(내국인 주민과 차이)
	주거 및 생활	소득 중 주거비용 비율 거주환경 만족도 지난 한달간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시간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률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비율
	권리	귀화 및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율 인종, 문화, 종교적 이유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권리	귀화 및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율 인종, 문화, 종교적 이유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한국사회 기여	세금납부 경험

※ 자료 : 법무부 자료 재구성

5)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연구(2023.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만, 개정안 제9조의2제3항은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지수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외국인정책 연도별 시행계획⁶⁾ 수립 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행법령은 이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⁷⁾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한 후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57